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최은하* · 유영재** · 이상빈***

<목 차>

I. 서론	IV.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II. 특수경비원의 이론적 논의	V. 결 론
III. 특수경비원의 현황 및 교육실태	

<요 약>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특수경비, 경비교육, 민간경비, 청원경찰, 경비업법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외래강사(제1저자)
 ** 여주대학교 경찰경호학과 강사(공동저자)
 *** 남서울대학교 교수(공동저자)

I. 서 론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의 시행에 따라 국가중요 산업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군과 경찰은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에서 국토방위와 민생치안의 유지에도 벅찼다. 청원경찰제도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로 하여금 소요경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까지 경비업무를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던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었을 뿐 아니라 부가적인 여러 가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중요산업시설 경비에 대한 청원경찰제도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발빠른 노력없이 인력경비에만 안주하는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각종 센서·CCTV 등 방법기기를 활용한 「기계경비」(機械警備)에의 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경비의 효율화에 대한 비판을 받기에 이르게 되자 2001년 경비의 효율화·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박병식, 2000; 145-146). 따라서 현재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원경찰제도가 국가 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도입된 것이지만 제정당시 아직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오히려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특수경비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처음 투입된 이래,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를 계기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비중과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할 수 있다.

이렇듯 특수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 더불어 일반경비원과는 달리 업무의 성격상 국가중요시설경비라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질적인 향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특수경비원의 특성을 얼마나 살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를 점검하여 보고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처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개발하여 특수경비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때인 것이다.

따라서 이하는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특수경비원의 이론적 기초

1. 특수경비원의 개념 및 특징

특수경비원이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특수경비업무인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경비업법 제2조). 즉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자가 배치를 지시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 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경비업법 제14조 1항).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애를 일으켜서는 아니되며(경비업법 제14조 1항),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경비업법 제14조 4항).

무기사용에 관하여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경비업법 제14조 8항, 9항).

따라서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을 지닌 경비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경비원으로 다음과 같다.

경비원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p>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경비업법 2조)</p>	<p>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하는 자(경비업법 2조)로 여기서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경비업법시행령 2조)</p>	<p>“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에서 근무한다(청원경찰법 2조).
<p>(경비업법 10조 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p>(경비업법 10조 2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로 여기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경비업법시행규칙 7조). <p>이와 같은 자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p>	<p>(청원경찰법시행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로 임용의 신체조건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체가 건강하고 사지가 완전하여야 한다. 2. 신장이 남자는 160cm 이상, 여자는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3. 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3kg 이상이어야 한다. 4.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청원경찰법시행규칙).

Ⅲ. 특수경비원의 현황 및 교육실태

1. 특수경비원의 일반적 현황

1) 경비업체 허가업종별 특수경비의 현황

<표 3-1> 허가 업종별 현황

시도별	내용 업체수 (법인수)	분포도 (%)	허가업종별					
			계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계	2,749	100.0	3,262	2,637	44	401	133	47
서울	1,196	43.5	1,471	1,152	30	223	38	28
부산	239	8.7	278	233	2	30	10	3
대구	155	5.6	175	149	1	17	7	1
인천	104	3.8	123	95	-	18	8	2
울산	35	1.3	41	34	1	4	2	-
경기	365	13.3	428	342	7	46	29	4
강원	42	1.5	49	42	1	4	2	-
충북	54	2.0	65	52	-	6	7	-
충남	163	5.9	180	158	-	13	9	-
전북	61	2.2	70	59	1	6	3	1
전남	146	5.3	175	139	1	18	10	7
경북	74	2.7	76	71	-	2	2	1
경남	98	3.6	113	94	-	13	6	-
제주	17	0.6	18	17	-	1	-	-

* 자료: 경비협회 내부자료, 2007.

** 2007. 6. 30 기준.

경비업체의 허가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749개의 법인 중 특수경비 허가가 47개이고 서울이 2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경비원 배치현황

<표 3-2> 경비원 비치현황

시도별 내용	계	분포도 (%)	일반경비원					특수 경비원
			소계	시설	호송	신변	기계	
총계	128,730	100	122,961	109,887	2,770	5,372	4,932	5,769
서울	35,974	27.9	35,288	29,678	1,197	3,400	1,013	686
부산	10,709	8.3	10,312	9,213	293	542	264	397
대구	5,603	4.4	5,534	4,922	221	128	263	69
인천	10,009	7.8	7,725	7,228	37	243	217	2,284
울산	3,105	2.4	2,804	2,685	39	7	73	301
경기	30,899	24.0	30,550	28,659	243	482	1,166	349
강원	2,781	2.2	2,649	2,359	82	21	187	132
충북	2,462	1.9	2,343	2,075	43	39	186	119
충남	7,948	6.2	7,771	6,975	256	184	356	177
전북	2,696	2.1	2,629	2,364	73	28	164	67
전남	5,689	4.4	5,207	4,526	153	155	373	482
경북	4,706	3.7	4,458	4,131	30	1	296	248
경남	5,224	4.1	5,107	4,565	82	130	330	117
제주	925	0.7	584	507	21	12	44	341

* 자료 : 경비협회 내부자료, 2007.

** 2007. 6. 30 기준.

경비원수는 총128,730명으로 이 중 특수경비원의 수는 5,769명으로 서울이 686명, 부산이 686명, 대구가 69명, 인천이 2,284명, 울산이 301명, 경기도가 349명, 강원이 132명, 충청이 119명, 충남이 177명, 전북이 69명, 전남이 482명, 경북이 248명, 경남이 117명, 제주가 34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특수경비와 배치관련 변화추이

<표 3-3> 특수경비원 배치관련 변화추이 2007. 6. 30 기준

구분	02, 12. 31	03, 12. 31	04, 12. 31	05, 12. 31	06, 12.31	07 6.30
허가 업체수	26	36	31	40	45	47
인원	2,513	2,955	4,057	5,041	5,526	5,769

*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7, 재구성.

특수경비원 비치관련 변화를 보면, 2002년에는 특수경비허가 업체 수 26개 중 그 인원은 2,513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4년 허가 업체 수는 31개로 전년도 2003년에 비하여 줄어들었지만 그 인원수는 4,057명, 2005년에는 40개 허가 업체 중 5,04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2007년 6월 기준으로 47업체 중 5,769명의 특수경비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경찰책임 국가중요시설 경비현황

구분	계	특수경비원 단독근무	특수경비/청원경찰 합동근무	청원경찰 단독근무
업체수	100%	8%	9%	83%
근무인원	100%	5%	21%	74%

* 출처: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7; 김종웅·이상철, 2008: 154, 재인용.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방호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대통령 훈령 제28호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을 사용목적상 분류로서 행정시설과 산업시설로 분류하고 시설규모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누는 형식적으로 분류와 시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기타급으로 나누는 실질적으로 분류하고 있다.¹⁾ 이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은 2007년을 기준으로 단독근무 8%, 합동근무 9%, 청원경찰 단독근무 83%로 아직까지 청원경찰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실태

1) 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

민간경비원에 대한 신입 및 직무교육과정은 경비업법 제13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경우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

1) 2007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가중요시설은 아래와 같다. (김종웅·이상철, 2008: 154, 재인용)

구분	계	‘가’ 급	‘나’ 급	‘다’ 급
계	439	97	157	185
경찰 책임시설	106	14	41	51
군 책임 시설	333	83	116	134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때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경비업법 제13조 1항, 2항, 3항).

우선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법적 교육과정이 구분되어 있으며 신입교육의 경우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해진 교육과정과 시간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8조). 신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의 구분은 이론교육 7시간, 실무교육 18시간, 기타 3시간 등 총 28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직무교육은 매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4시간)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경비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법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경우도 일반경비원과 마찬가지로 신입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교육과정을 구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신입교육의 경우 특수경비원으로서의 경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교육의 과목과 시간은 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며 교육 장소는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반면에 청원경찰은 법적 동일 개념의 민간경비원이면서 일반경비원과는 교육과정이나 업무수행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별성이 보이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교육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서 따르면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기본교육은 청원경찰로 임용되면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경비구역 배치이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2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 그리고 직무교육은 매주 2시간의 범위 안에서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받고 매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청원주로부터 받아야 한다(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6조).

신입교육 교과목 및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형태	교육과목(시간)	소계	비고
일반 경비 원	이론	경비업법 및 관련법(4),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 포함)(3)	7시간	총 28 시간
	실무	테러대응요령(3), 화재대처법(2), 응급처치법(3), 분사기 사용법(2), 예절 및 인권교육(2), 체포 호신술(3), 검문검색요령(관찰, 기록법 포함)(3)	18시간	
	기타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3)	3시간	
특수 경비 원	이론	경비업법 및 관련법(청원경찰법, 경직법)(8), 헌법 및 형사법(4), 범죄예방론(3)	15시간	총 88 시간
	실무	정신교육(2), 테러대응요령(4), 폭발물 처리요령(6), 화재대처법(3), 응급처치법(3), 분사기 사용법(3), 출입통제요령(3), 예절교육(2), 기계경비실무(2),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6), 시설경비요령(야간 경비업무)(4), 민방공(화생방 포함)(6), 총기조작(3), 총검술(5), 사격(8), 체포 호신술(6), 관찰 기록법(3)	69시간	
	기타	입교식, 평가, 수료식 등(4)	4시간	
청원 경찰	정신	정신교육(8)	8시간	총 76 시간
	학술	형사법(10), 청원경찰법(5)	15시간	
	실무	경찰관직무집행법(5), 방법(3), 경범죄처벌법(2), 시설경비(6), 소방(4), 대공이론(2), 불심검문(2), 민방공(3), 화생방(2), 기본훈련(5), 총기조작(2), 총검술(2), 사격(6)	44시간	
	술과 기타	체포술 및 호신술(6), 입교, 수료 및 평가(3)	9시간	

자료: 공배완, 2007: 18-19, 재구성.

2)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및 현황

2005년도 (2,735명)	에스원	248명	2006년도 10월까지 (1,770명)	경비협회	104명
	한체대	97명		한체대	108명
	경기대	178명		경기대	97명
	경비협회	145명		사격진흥원	76명
	에스원	234명		조합	119명
	경기대	168명		에스텍	0명
	경비협회	159명		재능교육	184명
	경기대	83명		경남대	26명
	에스원	70명		에스텍	79명
	경비협회	145명		조은	100명
	한체대	84명		재능교육	98명
	경기대	186명		조합	58명
	에스원	129명		경기대	119명
	경비협회	146명		에스원	32명
	경기대	128명		조은	77명
	경비협회	81명		경비협회	103명
	에스원	107명		조합	60명
	경기대	70명		재능교육	70명
에스원	87명				
경비협회	141명				

자료 :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부자료, 2006; 이상원·박주현, 2007, 재인용.

경찰청 자료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은 2005년 2,735명이 특수경비원 신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10월까지 1,770명의 특수경비원이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IV.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1. 특수성없는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시간의 형식적 확대

우리나라에서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0조의 기본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누구든지 민간경비원이 될 수 있고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경우 신입교육에 대한 내용만 다를 뿐이다.

특수경비원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누어져 실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종전의 2006년 2월 개정 전까지 총80시간인 것을 총 88시간으로 늘린 것 외에 특수경비원이라는 특수라는 단어를 무색하리만큼 특수성을 살리고 있지 못하다.

특수경비원은 말 그대로 일반경비원과 달리 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는 경비교육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시설이란 일률적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요시설에 따라 즉, 공항은 공항에 맞는 특성, 항만은 항만에 맞는 특성, 은행은 은행에 맞는 특성 등에 따라 요구되는 경비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특수경비원의 배치장소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통과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특수경비원은 제도적으로 없지만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항보안경비를 보면, 경비원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해 판정으로 검정한다. 다만, 지정강습을 받고 그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그 내용을 보면 공항보안경비 1급 검정의 경우, 학과시험은 경비업무의 기본사항, 경비업법·항공법 등 관계법령, 승객 접대 서비스 및 영어, X-ray 투시식 수하물 감시장치 등의 작동원리 및 기능에 대한 지식, 공항 관련사항, 위험물 발견시의 응급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다. 한편 실기시험은 승객접대 서비스 능력 및 초보적인 영어 회화 능력, 수하물검사 기계의 조작 및 점검과 위험물 발견능력, 업무관리 능력, 위험물 발견시의 응급조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이 정해져 있다(박병식, 2000: 154-156).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 특수경비교육과는 달리 공항보안경비원으로 하여금 공

항이라는 특수성에 맞춘 항공법에 대한 법령, 승객 접대 서비스 영어, 승객 접대요령 등과 같은 과목들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근무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자질을 함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의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에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을 보다 구체화시켜 총88시간 중 44시간은 경비원이 공통적으로 함양해야 할 기본과정으로 하여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44시간은 중요시설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심화과정으로 구성함으로써 특수경비원의 전문화에 기하여야 한다.

2.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중복된 교과목

특수경비원의 성격상 현장별 실무교육이야말로 특수경비 수행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훈련은 통상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이론교육에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청원경찰법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이것이 유사관련 종사자의 업무를 파악하는 기초적 소양을 익히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편제된 시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경비업법 및 관련법(청원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이 8시간으로 일반경비원이 4시간인데 비하여 2배 많고 정신교육의 경우 2시간으로 청원경찰이 8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4배 적다. 이는 특수경비원의 중요시설경비하는 경비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직법과 청원경찰법에 지나치게 길게 편성된 시간을 조정하여 오히려 정신교육시간을 늘림으로서 윤리적 사명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다.

따라서 경비원과 관련이 적은 경찰관직무법이나 헌법, 형사법의 경우 경비업과의 관련법으로 하여 헌법의 경우 인권관련 측면, 형사법의 경우 현행법체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우 불심검문과 같이 관련부분만을 포괄하여 편제하고 그 외에는 오히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실용법률 및 기타 관련 세부규칙으로 대체 심화한다.

다른 한편 관찰기록법과 같은 실용성이 없는 과목을 삭제하고 분사기 사용법과 화재대처법, 테러대응과 정보보안, 민방공과 같이 유사한 분류의 교과목들이 세분되어 있지만 유사한 과목으로 모아 그 나머지 시간을 특수경비원의 특화과목을 신설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률적인 총기 교육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면서 청원주의 감독책임 하에 무기를 소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의 특

수경비원의 교육에서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은 총 16시간으로 편제되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총기교육과 관련하여 사격장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경비원의 배치장소가 모두 반드시 총기가 필요한 시설은 아니고 더욱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되고 있지만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도 많다. 오히려 급한 것은 특수경비원의 배치장소인 중요시설별 항공, 항만, 관공서, 은행,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총기에 대한 편중된 교육보다는 기본적인 총기에 대한 기본적 교육의 이해에 중심을 두고 일률적으로 편중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격시 사격총알 수까지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의 난립

우리나라의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일반경비원과 차별화없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교육기관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당장 특수경비원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과목을 개발하여 실행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난립되고 일반화된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상황은 별반 다르게 변화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을 지정하자는 논의에 앞서 기존 교육기관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V. 결 론

오늘날 민간경비의 이미지는 채용부터 낮은 수준의 교육훈련, 보수, 적은 승진의 기회 등으로 대체로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종사자도 또한 언제든 이직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거나 업무자체의 전문성을 익힐 의욕조차 갖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민간경비업의 양상은 특수경비원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수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반경비원이나 청원경찰과 별반 다르지 않는 형식적인 교육훈련을 갖고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란 어렵게 보인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에 통하여

전문화된 특수경비원을 양성시키는 것은 곧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효율화와 더불어 민간경비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기존의 일반경비원이나 청원경찰과는 차별적인 전문화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위주의 강의를 늘리고 무기관련 교육확대, 특수경비원에 걸맞는 교과목의 편성함으로써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자체를 일반경비원과 중첩되는 공통된 것들과 특수경비원이기 때문에 심화시킬 요소들에 대하여 시간을 구분하고 형식적으로 이론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활용 가능하고 직접적인 교과목과 시간의 배분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심화하여 전문화된 경비원을 양성함으로써 민간경비의 발전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화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공배완(2007).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공안행정학회보』.
- 김종웅·이상철(2008). “한국의 특수경비제도와 운영 실태”.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9권 1호, 151-162.
- 박병식(2000).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人文社會科學研究』, 6호, 143-161.
- 이상원·박주현(2007). “특수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 305-326.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raining of Special Security Guard

Choi, Eun-Ha · Yoo, Young-Jae · Lee, Sang-Bin

Currently, the security operations in nation's key foundations in Korea are performed by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Police Act and Security Business Act, respectively. In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vate police system in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it was just a hurriedly-set plan on the basis of Japanese Sunsa system as by that time there was no such system revitalized. Howe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could offer wider range of security services including those of the private police wi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1976 and April 2001, respectively. Moreover,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rose o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in nation's key foundations after 9.11Terror Event in the U. S. 2001.

However, a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education/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we found that such education/training which is not activating the specialty of special security guard will not respond to the social demands. Special security guard owns its own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of general security guard as they are in service in nation's key foundations. Thu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training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nation's key foundations.

Therefore, the well-educated special security guard through the reorganized and specialized education/training for the protection of nation's key foundations is expected to offer qualitatively improved security services.

Key Words : Special security guard, Security training, Private security, The private police,
Security business act